

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범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서경원 등 간첩사건을 계기로 불고지죄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인륜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불고지죄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전국민이 총체적으로 대응키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 이 불고지죄는 사상 또는 윤리적 양심의 표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단순한 객관적 경험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곧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현행법은 불고지범과 본범이 친족관계에 있을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고지죄가 인륜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신고대상 범죄를 간첩 등 주요범죄에 한정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본범과 불고지범이 친족관계에 있을 때 이를 아예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입법론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의 주장과는 하등 무관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불고지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미합중국 국민이 미국에 대한 반역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닉하고 지체없이 미합중국 대통령 또는 연방 판사 또는 주 정부의 지사 또는 판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미국법전 제18편 제2382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형법 제100조), 서독(형법 제138조, 제139조)의 경우에도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위 반혁명범죄는 물론이고 일부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불신고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이 불고지죄 규정은 본범을 신고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양심을 입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불고지범을 두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양심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고문·가혹행위

절대적인 예속으로부터의 해방,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동아일보사 발행 '세계의 인권선언'에 따르면,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 신체의 자유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간 이래 전세계에서 발표된 주요 인권선언만 해도 6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 또 1989년말 현재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만 하더라도 130여개에 이른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 특히 고문 등 가혹행위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 반면, 이같은 사실은 인권침해가 전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 일인가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또 국제인권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권보고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일단 차치하고라도 각종 인권침해 시비가 선진국·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침해사태가 전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들이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이 인권보장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 정부의 의지

제5공화국 시절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나 박종철군 치사 사건이 있었다. 제6공화국은 이같은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정부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

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억압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제6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고문근절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구현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왔다.

특히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정신으로 사법경찰관과 수사담당자들에게 제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시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등 구속장소를 수시로 감찰하고, 안기부·치안본부 등 자체 구속장소가 없는 수사관서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구속 기타 가혹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수사 담당자들도 가혹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추궁과정을 지켜 보면서 성과위주의 수사를 지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방향으로 의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비과학적인 자백위주의 수사방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사방식을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가혹행위 발생소지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혐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는 ‘체포장’ 제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혐의자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인신구속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는 한편, 과학적 수사장비를 확충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것을 근거로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든지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적법절차가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6공화국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1989년 6월 4일 모 파출소에 연행되었던 경범죄의자가 6

월 5일 새벽 2시경 뇌진탕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사건발생 즉시 이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등 6명을 바로 구속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선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행위가 극히 일부나마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나, 반면 이는 우리 정부가 가혹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력히 천명한 바와 같이 제6공화국 정부의 가혹행위 근절의지는 확고하다. 또한 고문과 억압이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대와 토대 역시 더욱 확고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침해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즉각 정확하고 상세한 진상과 조치내용을 밝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나. 일부의 시비

그러면 여기에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혹행위 등의 시비가 있었던 세 가지 사례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서경원 등 간첩사건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경원씨는 수사기관에서 잠을 못 자도록 구타당하고 강제로 알약을 받아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 역시 조사받는 동안 잠을 못 자고 온 몸을 구타당했으며 약물을 투여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한 두 가지 일화만을 소개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내용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입기자들이 들어와 그들과 환담까지 나누었다고 한다.

홍씨는 자신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조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필로 수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조서 말미에 보태기까지 하였다. 이는 곧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강압에 의해 진술했던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에서도 홍씨의 고문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홍씨의 가족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 김영애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애씨는 조사를 받는 동안 구타를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1989년 9월 2일 동생 김모씨와 면회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거나 고문당한 사실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아주 잘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영애씨는 또 그 직후인 9월 7일 변호인과 접견할 때에도 고문당한 일이 없으며 수사관들이 잘 해준다고 스

스로 밝혔다.

그런데 김씨는 10월 23일 교도관과 면담할 때 처음으로 유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김씨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사회에서 수배기간 중에도 은신처를 찾아 다니다가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증상으로 알고 그동안 진찰을 의뢰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진료할 필요가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교도소측이 수차례 진료를 받아 보도록 권유했으나 김씨는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이같은 일이 있는 후 김영애씨를 면회했던 동생 김모씨는 11월 9일자 한겨레신문 국민기자석에 ‘...가족들이 면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김영애씨는 연행 직전 도피과정에서 아이를 유산했으며, 그러한 몸인데도 진료를 받기는 커녕 구타를 당해 현재까지 하혈과 허리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투고했다.

동생 김모씨는 김영애씨와의 면회과정에서 본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 구속 중인 김씨는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친

당국의 진료 권유를 스스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동생 김모씨의 투고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 동생 김모씨는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언니 김영애는 연행되기 전 도피생활에서 유산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김영애씨 본인이 고문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김씨의 가혹행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 의문사

인권침해 시비와 관련, 자주 거론되어온 것으로 소위 의문사 문제가 있다. 의문사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인이나 사망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란 뜻이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사인과 사망경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변사자가 운동권 학생이거나 근로자 등일 경우에는 소위 의문사라고 강조하면서 사인을 밝히려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국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

이다.

그동안 소위 의문사라고 주장되고 있는 일련의 변사사건을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모두 사인이 규명되었고, 또한 제6공화국에 들어와 소위 의문사로 문제제기된 한 두 건의 변사사건도 모두 사인이 철저히 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조차 사인이 은폐된 소위 의문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수사일지라도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풀어 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단순히 사체 하나의 발견으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힌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인과 주변 상황에 대한 수사를 통해 타살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밝혔을 경우에는 이에 만족할 도리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극히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사인이나 사망경위 등 중요한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답변을 못해 준다는 이유로 변사자가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생했던 몇몇 변사체 발견 사실과 관련, 일부의 주장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

이철규군은 변사체로 발견될 당시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이군은 1989년 3월경에 발간된 조선대 교지 창간호 '민주조선'의 편집위원장으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북한정권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 교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됨으로써 5월 3일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군은 수배를 받고 있었다.

이군의 경우 이와 같이 미리 구속영장까지 받아 놓았기

때문에 검거만 하면 즉각 구속을 집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군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따위는 전혀 필요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군의 변사체가 발견된 날은 5월 10일로 부산 동의대 경찰관 참사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와 함께 마침 5월 18일이 광주민주화운동 제9주년이 되는 날이었으므로 이철규군 변사사건은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처음 전남도경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경찰관들이 이군의 검문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8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22명이 참여하여 검찰수사인력만으로 수사를 전담하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군의 사인은 익사이고, 그 경위는 이군이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89년 6월 1일부터 한달여에 걸쳐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찰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검찰수사와 국회조사가 이루어져 사인이 익사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기로 한다.

그들이 제시한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물에 떠 있는 사체의 경우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랑크톤 검출법만으로는 익사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사람을 물에 집어 넣었을 경우에도 물이 기도과 식도를 통해 위와 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이나 신장 등은 혈액을 통해서만 외부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면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등에 플랑크톤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간이나 신장 등에 플랑크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물에 빠졌을 당시에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므로 사인은 곧 익사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군의 경우 위나 폐 뿐만 아니라 간, 신장 등 장기

전체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두번째로는 이군의 사체에 대한 부검과정에서 메스와 고무장갑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장기를 떼어낼 때마다 메스와 고무장갑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사체부검 과정에서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 대신 가검물을 검사하기 직전 바깥에 부착되어 있던 플랑크톤을 완전 제거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문국진 박사도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재부검 요청이 검찰에 의하여 거부되고 유족측과 소위 '이철규군 사인규명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데려 온 미국 인권의사회 소속 의사 커쉬너(Robert H. Kirschner)씨의 재부검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인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는 이미 사후 50

여일을 경과한 시점이었고, 부검시 장기조직의 일부를 채취한 후 나머지 장기를 사체 안에 뒤섞어 놓고 봉합하였기 때문에 재부검하더라도 각 장기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려워 처음 부검에서와 같은 사인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는 추가부검의 가능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한의학협회에 질의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부검, 감정 과정과 결론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체의 부패가능성 때문에 추가부검을 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 오기도 하였다.

또한 커쉬너씨의 부검집도는 개인이 사체를 임의로 해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사체해부보존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커쉬너씨가 부검 후 가검물을 채취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임의로 감정한 다음 독자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경우 그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방법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커쉬너씨의 재부검은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며 또한 정당한 조치였다.

■ 중앙대생 이내창군 변사사건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함께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군 변사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인천지부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그녀의 남자 친구가 이내창군이 탔던 여수발 거문도행 페리호에 동승했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더욱 관심의 초점이 모아 졌었다.

변사체가 발견된 다음 날 여수경찰서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11월 초순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정밀한 수사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이내창군은 실족으로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그동안 81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159회에 걸친 조사를 벌였고, 거문도 내왕 여행객 415명의 진술을 받았으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하여 6회에 걸쳐 변사체 발견 장소를 수색하였다. 그리하여 단서가 될만한 유류품을 모두 수거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현장검증과 부유물 이동실험을 하는 등 진상 규명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변사체에 대한 검사와 부검은 모두 중앙대 교수와 유족 및 학생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내창군 사인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와 학교측에 수시로 수사상황을 알리는 등 공개수사를 펼쳐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가장 관심이 집중된 대목은 안기부 여직원의 여객선 동승 문제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 여직원은 전산입력 작업원으로 당시 하계휴가 중이었고, 남자 친구는 목포 해양전문대 졸업반으로 방학을 맞아 함께 놀러가는 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배를 탔을 뿐, 이내창군과 서로 접촉했다거나 그밖에 이내창군의 변사사건에 관여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

■ 대우중공업 기능사원 정경식씨 변사사건

대우중공업 창원 제2공장 생산1과 소속 기능사원 정경식씨는 1987년 6월 8일 오전 11시경 경남 창원시 남산동 소재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기숙사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합의문제로 동료 근로자 홍모씨를 만났다가 헤어

진 뒤 실종되었다.

그 후 정씨는 1988년 3월 2일 오후 2시 50분경 창원시 불모산동 소재 오성농장 뒷산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던 감시원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정씨의 사체는 모두 부패되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감정을 통해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체와 함께 발견된 국방색 허리띠, 우산, 운동화와 대우중공업 작업복, 점퍼 등 의류품들이 정씨의 변사체임을 입증해 주고 있었다. 특히 정씨의 경우 과거 팔뚝이 골절되어 이를 치료하면서 촬영해 둔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체의 팔뚝을 엑스레이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런데 재야단체 등에서는 이외는 별도로 창원시 동정동 소재 천주산 관음사 뒤편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정경식씨의 사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발표는 조작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정씨의 생존시 엑스레이 사진 등을 기초로 두개골과 치아를 분석 감정한 결과 관음사 뒤편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정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46세 정도의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 후 정씨의 어머니는 불모산에서 발견된 유골을 인수해 갔다. 그렇다면 이는 재야단체 등에서 정씨라고 주장한 변사체가 진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서울대생 우종원군 변사사건

1985년 10월 12일 오전 10시 35분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명륜동 부락 앞 철로변에서 우종원군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우군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재학중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우군이 운동권 학생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체검시결과 상의가 모두 찢겨지고 전신에 찰과상이 있는 등 열차에서의 추락사고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징후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있었다. 이와 함께 소지품 중에서 '어머니, 형, 누나, 숙부님, ○○(사촌동생)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글씨는 우군의 생전 필적과 동일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사자와 동일 필적의 유서는 그가 자살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실지로 우군의 경우 그 이상 죽음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그리고 그밖에는 사인이 될만한 다른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군 변사사건을 의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의무경찰 장영식군 폭행치사사건

장영식군은 고려대 재학중 입대,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87년 7월 20일 새벽 1시경 구로경찰서 경비과 교통계 의경 내무반에서 동료 신모군의 폭행으로 사망하였다.

사체를 부검한 결과 장영식군의 사인은 신경성 쇼크사로 밝혀졌으며, 가해자 신군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처벌까지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혹자는 정부가 사망원인 등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의문사의 한 예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로 어이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4. 소위 백색테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양상을 정밀분석해 보면 소위 반정부 또는 반체제 세력에 의한 화염병 투척, 공공기관 기습, 경찰관 납치·감금행위 이외에도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백색테러는 이러한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폭력은 민주사회의 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 폭력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폭력이 인류의 적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좌·우를 막론하고 단호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요컨대 문제는 이러한 테러행위들이 마치 정부의 암묵적 비호 아래 자행되고 있는 양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극우집단에 의한 백색테러라고 주장되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고문 계훈제씨 집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을 살펴 보기로 한다.

1989년 5월 22일 하오 9시 50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 2동

한 대
대해
정부의
관
판
관
사이
연다는

전민련 고문 집에 화염병

계훈제씨 다리 다쳐...재야인사 겨냥 첫 테러



전민련이 백색테러라고 주장했던 계훈제씨 집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은 계씨 집안의 내부적 충돌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612번지 계훈제씨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20대 청년 1명이 화염병 3개와 벽돌조각 2개를 던지고 달아났다. 이로 인하여 계훈제씨와 그 이들이 경상을 입었고 유리창 5매가 파손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는데, 전민련은 사건발생 다음날 “계훈제 상임고문 테러행위에 대한 전민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이 사건은 정부의 방조 하에 이루어진 극우폭력집단의 테러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현 정권이 탄압체제를 강화하고 좌우대결을 조장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극우폭력집단의 민족세력에 대한 테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폭력세력들은 각종 어용조직을 결성하고 권력의 방조 아래 각종 집회 및 민주단체인사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이 발표된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졌다.

이 사건은 소위 백색테러가 아니라 계씨 집안의 내부적 충돌에 의해 빚어진 것이었다. 화염병을 던진 장본인은 바로 계씨의 조카인 계영권씨였다. 그는 작은 아버지 계훈제씨가 집을 사주기로 약속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데다 자신의 대학진학을 극구 반대하는 데 불만을 품고 계씨를 망신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1989년 7월 15일 광주 조선대 총장실에서 직위해제에 불만을 품은 면직교수 오병인씨가 총장 이돈명씨를 구타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 오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

데도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소위 극우 집단에 의한 백색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생각하기에 따라 진실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소위 테러사건 중에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테러사건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수사 자체의 장애 때문이지 정부가 이를 비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1988년 5월 6일에 발생했던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서정의씨 피랍사건, 1988년 8월 6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 1989년 1월 8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집단 피습사건 등 소위 백색테러라고 일컫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정부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후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최근 일부 공안사범들이 교도소 생활을 투쟁활동의 연

장으로 생각하고 처우개선 등을 구실삼아 구호제창, 단식, 집단소란, 기물파손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교도관에게 폭언·폭행 등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름지기 교도소나 구치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질서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에 불과한 수용자들의 불법과격투쟁은 교도소의 수용질서를 뒤흔들고 교도관의 사기마저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교정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교도소 당국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소내 질서유지나 규율에 순응하는 일반 형사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설득에 불응할 경우 부득이 행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재소자들과 직원 사이에 다소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 안의 인권유린이나 가혹행위로 왜곡 선전하



질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교도소에서의 이와 같은 광경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진은 1990. 3. 2 대전교도소 정문 앞)

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통해 수용질서 문란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전교도소 재소자 정장현 등 사건

대전교도소 재소자 정장현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여 금지징벌을 받고 독방에 수용되었다.

그러자 교도소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그는 1988년 12월 3일 상오 10시 40분쯤 다른 재소자로부터 담요 1장을 빌리겠다고 속여 수용실 문이 열리는 순간 담당 근무자를 밀어 넣고 열쇠를 탈취하여 감금하였다. 그런 다음 각 수용실 문을 차례로 개방하여 동조자 구본정 등 8명을 나오게 한 후 함께 소란을 피우면서 다시 직원 3명을 붙잡아 포승 등으로 결박하고 구타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상습적인 규율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형법 제 46조와 동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금치정벌을 내려 독방에 수용하는 것을 두고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그 재소자나 가족들의 일방적인 왜곡 비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안양교도소 재소자 김영술 등 사건

김영술은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복역하고 있었다. 그는 1989년 8월 19일 외부인과 면회하던 중 소정의 접견시간이 지난 후에도 접견을 계속하므로 담당 교도관이 이를 알렸다. 그러나 그는 교도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의자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이

부득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수용중인 손영미 등 학생사범들이 교도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극렬한 소란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일반 재소자들에게까지 단식농성을 선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 행위자들의 저항으로 교도관들과 다소의 몸싸움이 있었고, 주동자 8명을 소정 절차에 따라 징벌조치하였다.

그런데 소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30여명은 이같은 사정을 도외시한 채 사건발생 직후인 8월 21일 교도소에 몰려와 오히려 소장의 공개사과 등을 외치면서 교도소 정문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민원실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김영술이 부당한 접견시간 단축에 항의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수용자들을 교도관들이 구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접견시간을 어긴 김영술이 난동을 부리고 소란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부득이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한 것이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전

혀 없었으며, 소위 민가협 등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와는 하등 관련조차 없는 사건이었다.

■ 부산구치소 재소자 조현덕 등 사건

부산 동의대 방화살상사건 관련자인 조현덕이 1989년 11월 16일 하오 6시쯤 동료 문성현에게 전달해 달라고 구매물을 근무직원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사과 1개가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조현덕은 이를 고의로 던졌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같은 건물에 수용중인 학생들과 합세하여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극렬한 소란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구치소측은 즉각 주동자들에 대한 금치징벌 조치를 취했다. 이때 그들은 단식을 시작하였으나, 금치 3일 후 각자 잘못을 반성하고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치소측은 전원에게 나머지 징벌을 면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 일부에서는 수용자들이 1주일 이상 단식했다느니 교도소측에서 그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곡해하고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본래 교정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를 마무리 하는 최종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질서확립을 위한 형사사법 목적의 성패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안에서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교도소 생활을 투쟁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극소수 재소자들의 수용질서 문란행위는 결국 우리의 국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분별없는 작태가 왜곡 전달됨으로써 오히려 교정 담당자들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듯이 사회 일각에 비쳐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6.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 접견권은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바로 '신체의 자유권' 조항에 포함돼 있는 것은 그것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소위 에스코베도 사건(Escobedo v. Illinois Case)과 미란다판결(Miranda v. Arizona Case)로 사법사상 한 획을 그었다. 당시까지는 변호인의 접견권에 대해 사실상 수사기관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으나 이 판결을 통해 그런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도 현행법상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 이 권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변호인이 접견하거나 물건을 수수할 때 법령이나 법원의 규칙으로 도망, 증거인멸 또는 교도관이 계호하는 데 지장이 있는 물건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또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접견의 일시, 장소 및 시간을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변호인의 접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서독은 소위 '접견교통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원조직법 시행법률에서 테러범 등 중범죄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될 때에는 여러 측면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서독이 이런 법률을 갖게 된 것은 테러범죄가 빈발하면서 변호인이 테러단체의 일원으로 재소자와의 접견을 방자하여 새로운 범죄를 공모하거나 증거를 인멸, 날조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에서 중범죄로 구속돼 있는 자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증거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이나 고위 수사관은 접견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 접견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단일사건에 수십명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다수 변호인이 동시에 접견을 요구하거나 혹은 순차로 계속하여 접견을 신청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접견을 요구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용된다거나 수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장애를 주는 방향으로 행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행법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접견권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요컨대 변호인접견권은 수사권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이 학생들의 방화로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 죽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변호인접견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깊이있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 인권시비 속에 묻혀버린 또 다른 인권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에게 피랍된 경찰관을 구출키 위해 도서관에 진입했던 경찰관 7명이 학생

들의 방화로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 죽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다. 한 경찰간부에 따르면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교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경찰관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해 10월 14일에는 무고한 한 전문대생이 학생들로부터 프락치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물매를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듯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왔던 또 다른 인간의 권리가 선명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관심의 뒀안길에서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권리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처럼 어이없게 짓밟힌 인권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987년 6월 19일 충남 기동 2중대 상경 박동진군이 대전역 앞에서 시위대가 탈취한 버스에 치여 사망하였고, 12월 20일에는 광주에서 경사 신석만씨가 효죽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시위대의 습격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입원 가료중 12월 30일 끝내 숨졌다. 1988년 6월 11일에는 대전방범순찰대 소속 상경 김용덕군이 한남대 시위를 진압하던 중 학

표 4 사상경찰관 현황

원인별 연도별	다중범죄진압		기타	총계
	경찰관	전·의경		
1986	532	2,742	383	3,657
	1	1	77	79
1987	2,697	7,253	462	10,412
	1	1	73	75
1988	1,373	5,328	1,060	7,761
	0	1	72	73
1989	1,699	7,201	1,020	9,920
	4	3	93	100
계	6,301	22,524	2,925	31,750
	6	6	315	327

■ 중·경상자 인원
□ 사망자 인원
단위: 명

치안본부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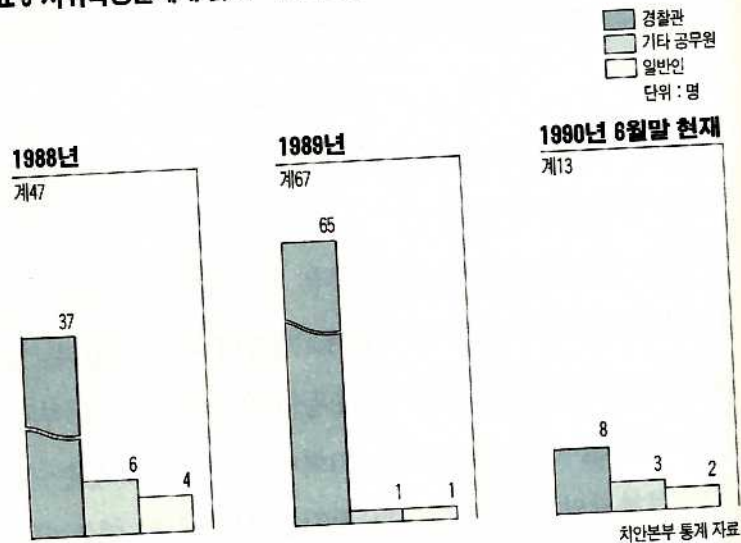
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옷에 불이 붙어 이를 끄다가 차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시위 진압이나 범죄 수사활동 중 사망한 경찰관은 무려 173명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도 1986년 이후 집회, 시위 등 다중범죄에 의해 부상당한 경찰관, 전·의경도 28,800여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는 경찰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6·29 선언 이후 학원, 노동, 재야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한 시위와 집단행동의 와중에서 극렬세력들은 폭력의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경찰관, 군수, 기업가, 사원, 교수, 학생, 민간인 등 각계 각층의 선량한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폭행·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협박·공갈과 온갖 인격모독을 당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납치·감금되고

표 5 시위학생들에게 납치·감금된 경찰관 등 현황



모욕·폭행을 당하더라도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심지어 교수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여 강제로 삭발을 당하는가 하면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아버지뻘 되는 사장을 발가벗기고 무릎을 꿇린 후 머리에 막걸리를 붓는 일까지 있었다. 이같은 행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모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우리는 말없는 다수가 입어 왔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폭력시위로 가게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철시상태에 이름으로써 많은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가 하면, 도심지에서의 집단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하였다. 또 화염병 투척으로 서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가게가 불타기도 하고 자동차들이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대학가 주변은 잦은 시위로 인해 집값이 하락, 말없는 다수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끼쳐 왔다.

이와 같이 그동안 선량한 사람들이 애꿎게 당해 온 피해
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이같은 피해를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려도 좋을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IV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1. 인권신장 기반 구축
2. 무엇이 달라졌나
3. 내일을 향하여

IV.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1. 인권신장 기반 구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척도는 인권이며,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화 실천과제의 요체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이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수치스러운 인권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이유로도 고문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격모독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한다'는 등 인권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다.

실제로 제6공화국 헌법은 보다 확실한 인권보장을 위해 기본권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한편,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 헌법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제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사전에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 헌법은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감사권과 조사권은 사실상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국무위원 불신임권까지 갖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막강한 견제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새 헌법은 법관의 임명절차를 크게 개선, 사법부의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컨대, 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 헌법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법관의 인사에 대한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권 독립 결의를 확고히 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사



1988년 9월 19일 발족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법부에 대한 신뢰도 아주 높아졌다.

아울러 새 헌법에서 신설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뒷받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9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래

1989년 말까지 7건의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인권옹호에 크게 기여한다는 신망을 받고 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가. 법령정비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6공화국은 헌법정신을 반영,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인권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 형사소송법 개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외에 구속이유까지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구속된 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의 형사소송법 중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과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및 검사인지사건 등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청구사유의 제한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범죄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권리를 새로 부여하여 피해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 형사보상법 개정

종래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석방된 피의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형사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액의 상한을 1일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와 관련, 1989년도에는 총 139건에 5억 4,204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형법 개정

형법상 국가모독죄(제104조의 2)를 삭제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억제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였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의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질문을 하기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찰관서에 동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 경범죄처벌법 개정

종래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거부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에 한하여 지문채취거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처벌대상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서 종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유언비어 날조·유포죄와 장발 및 저속의상, 떠돌이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의한 인권유린의 소지를 없앴다.

■ 소년법 개정

사형금지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국내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 사회보호법 개정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되어 왔던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감호청구사건에서 법관이 재

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사, 그 재량에 따라 감호판결 또는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감호시설에서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가출소 심사시기를 종래의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단축, 출소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하였다.

■ 사회안전법 개정

종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한처분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해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89년 6월 16일 사회안전법을 발전적으로 전면 수정한 보안관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 및 주거제한처분제도를 폐지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보강, 보안관찰처분제도로 바꾸고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국가가 주거와 직업을 알선·제공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당시 피보안감호자 35명을 그해 10월 12일까지 전원 석방하였다.

이와 같이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축소되고 그 처분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최근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의 숫자가 각각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보안관찰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비추어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

피고인에 대한 유치명령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줄였다.

그리고 즉결심판청구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래에는 판사가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할 것을 명하여 검찰청에서 사건을 좀더 신중히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개정 법률은 판사가 바로 무죄 등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종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사유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등 5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이 법률은 그것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2개 항목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새 법률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시장·도지사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가 발송되지 않으면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법한 시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제6공화국은 보호관찰법을 제정, 민주화·개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정책을 도입하였다.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은 범죄인을 수용시설 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선택 가능한 범죄자의 신체 구속을 조속히 풀어줌으로써 스스로 사회변화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구금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범죄인 및 부양가족에 미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9년 7월 1일 이 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1990년 2월 28일까지 총 8,168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한 바 있다.

나.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

제6공화국의 인권신장 의지와 관련, 가장 과감한 조치로서는 역시 구속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들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실정법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의 경우 범죄동기와 시대상황, 그리고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제6공화국 출범 첫 해에는 국가의 법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됨에 따라 구속자 석방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행위나 파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인권침해 문제로 등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속자 석방문제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2월 27일 구속자 2,134명(소위 시국사범 및 공안사범 125명 포함)을 석방하는 등 총 7,234명을 석방, 사면·복권하는 한편, 그해 12월 21일 다시 소위 시국사범 및 공안사범 281명을 석방하는 등 총 2,015명에 대해 석방 또는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12월 21일의 대사면에서는 사제폭탄 투척자 등 테러성 범행자까지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폭 석방하였다.

이로써 구속자 석방문제는 완결되었다. 당시 야권 3당

도 대량구속과 대량석방의 악순환에 따른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 저하 현상을 크게 우려하는 데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향후 구속자 문제를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

이는 곧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과거의 인권침해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 땅에 새로운 인권의 장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법률복지의 증진

법을 몰라 피해를 입은 무자력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발족되었다.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담 변호사 30명을 확보, 국민들에게 사선변호사 못지 않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9년도에 230,000여명에 대한 법률상담과 2,300여명에 대한 소송대행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옹호단체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굳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현재 연간 국고

보조금 1억여원을 지원, 법률구조사업 영역은 이제 가정 문제와 여성문제 등 전문 분야에까지 다변화를 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988년 7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상해 등 강력사건 가해자의 소재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500만원 이하, 상해를 입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 1988년 7월 이후 1989년 12월 31일까지 정부는 총 68건에 2억 9,6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행형제도의 개선

지난 2년간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 정부는 1988년 11월 행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계기로 재소자의 접견, 서신발송, 도서열독 및 신문구독, 방송청취 등

처우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대폭 완화하거나 전면 허용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등 재소자의 권익과 처우를 크게 향상시켰다.

■ 행형의 발전적 개선

과거와는 달리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도 접견을 허가해 주면서 접견 횟수를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친족 이외의 사람과도 서신교환을 할 수 있게 하고 서신발송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 작품활동 등 집필을 무제한 허용하고 소내 방송망을 통한 뉴스, 오락, 스포츠, 교육프로 등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의 경우 종래 시행하던 1인당 일시 소지 가능 수량(10권 이내)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도서가 아닌 한 얼마든지 열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나아가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미결수용자의 88%, 수형자의 42%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 재소자 급식의 향상

쌀, 보리쌀 각 50%의 비율로 급식하던 주식의 혼합비율을 재소자는 쌀 60%, 보리쌀 40%로 하였다. 또 피보호감호자는 쌀 70%, 보리쌀 30%로 쌀의 혼합률을 높여 일반 사회의 식생활 수준에 접근할 정도로 급식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 개방처우의 확대

수형자의 개방 처우는 수용시설에 있어서 구금 확보 위주의 보안적 요소를 대폭 완화하고 사회 접근적 처우를 통하여 석방 후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선진제도이다.

정부는 1988년 11월 30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천안에 개방교도소를 신설하고 모범 수형자에게 자치제를 폭넓게 허용, 교도관의 계호없이 자율적으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체와 연계하여 외부 통근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앞둔 수형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형기만료 전에 가석방 혜택을 주어 사회에 조기 복귀토록 하고 있다.



개방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은 기업체와 연계하여 외부 통근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의료시혜의 확충

정부는 재소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환자진찰을 위해 수용관리 규모에 따라 각 교정시설에 의사, 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장비 등을 확보, 의료시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병원에 비해 의료인력 및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도 정부는 재소자에 대한 효율적 의료시혜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각 교도소에 배치하여 부족한 의

료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인근 국·공립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계약하여 소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신축 이전한 진주교도소를 의료전담소로 지정 운영하는 등 재소자의 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평소의 투병이나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해 발생한 질병 중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곤란한 고혈압, 심장 질환 등 난치병의 경우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적절한 치료 시혜를 받더라도 불가피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이는 인위적으로 예방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지역 의사회와의 협조로 교도소 의무관을 전임근무 희망자로 교체 임용하고 있다. 앞으로 의무관을 신규 채용할 경우 교도소 전임근무 희망자를 우선 임용하고 부족 의료원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 개선하여 모든 재소자가 건강한 몸으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작업상여금 등 인상 지급

정부는 1988년도에 수형자 작업상여금을 평균 40% 인상한데 이어 1989년도에도 평균 36%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을 평균 26% 인상하였다.

이렇듯 작업상여금 등을 사회 일반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에 접근시켜 나가는 것은 재소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생활정착금을 조성해 줌으로써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

국회는 1990년 3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0일 국제인권규약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이 규약은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3개월 후 우리나라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인권규약 중 A규약으로 통칭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근로의 권리, 사회보

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규약으로 불리워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남녀평등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 정서'는 당사국의 개인에게 인권침해와 관련한 청원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들 국제인권규약에 일괄 가입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인권의 보편적 존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존중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국제인권규약에의 가입은 그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권규약의 여러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에 인권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개인이 규약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인권이사회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청원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이다.

개인의 청원권 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기로 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을 대내외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물론 일본도 이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현재 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3. 내일을 향하여

진정한 인권보장은 법과 질서가 잘 준수되는 안정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법질서 파괴는 곧 사회의 불안을 가져오고 이는 더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이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민주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보다 복된 사회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역사의 흐름을 망각한 세력들이 일부 남아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하고 이를 전복시키려 드는 한편, 오로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의 기틀을 뒤흔드는 폭력파괴행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일부 극렬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들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사회의 공동약속인 법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참다운 인권신장이 이

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인권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6·29 선언 이후에 나타난 우리의 사회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국가보안법의 운용, 인권시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인권신장을 위해 추진해 온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주로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로써 국법질서확립,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인권상황이 결코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 헌법에 담긴 인권보장의 정신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하여 머지 않아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인권문제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

인쇄일

1990년 7월 18일

발행일

1990년 7월 23일

발행처

법무부

정간위심의필